

#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 연구

손 홍\* · 김영태\* · 강부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 A Study on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Legal System in Korea

Hong Sohn\* · Young-Tae Kim\* · Boo-Mi Kang\*\*

\* ETRI Protocol Engineering Center /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sohn@pec.etri.re.kr, ytkim@pec.etri.re.kr, bmkang@pec.etri.re.kr

### 요 약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증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유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내지 산업표준 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ABSTRACT

In Korea we didn't have fundamental legal system on telecommunication until 'Communication Act' (Act No. 923) of Dec. 1961. After then, with rapid advances of technology and increases of request to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circumstances around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have been changed. The market has been enlarged and growed. Regulating of that field has been diverse and complex.

Specially, as WTO went into effect, it's been recognized that standardization is more important for correspond to openness and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In our country, national industry standardization began with 'Industry Standard Act of 1961', but it put mainly importance in manufacturing standard or industry standard till 1980'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egan to be active as TTA was set up in 1989.

Now regulating rules to telecommunication standard are including 'the Fundamental Act of Information Promotion', 'Telecommunication Act', 'Act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etc.', 'Software Industry Advancement Act',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Act'. In this paper, we will survey regulating rules to telecommunication standard and produce the future proposal to that.

### 1. 머리말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는 1888년 5월 전보장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00년 3월에는 전신법(법률 제59호)이 제정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한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에 제정된 전기통신법(법률 제923호)이라고 할 수 있다[1].

한편, 전기통신법은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함께 1983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36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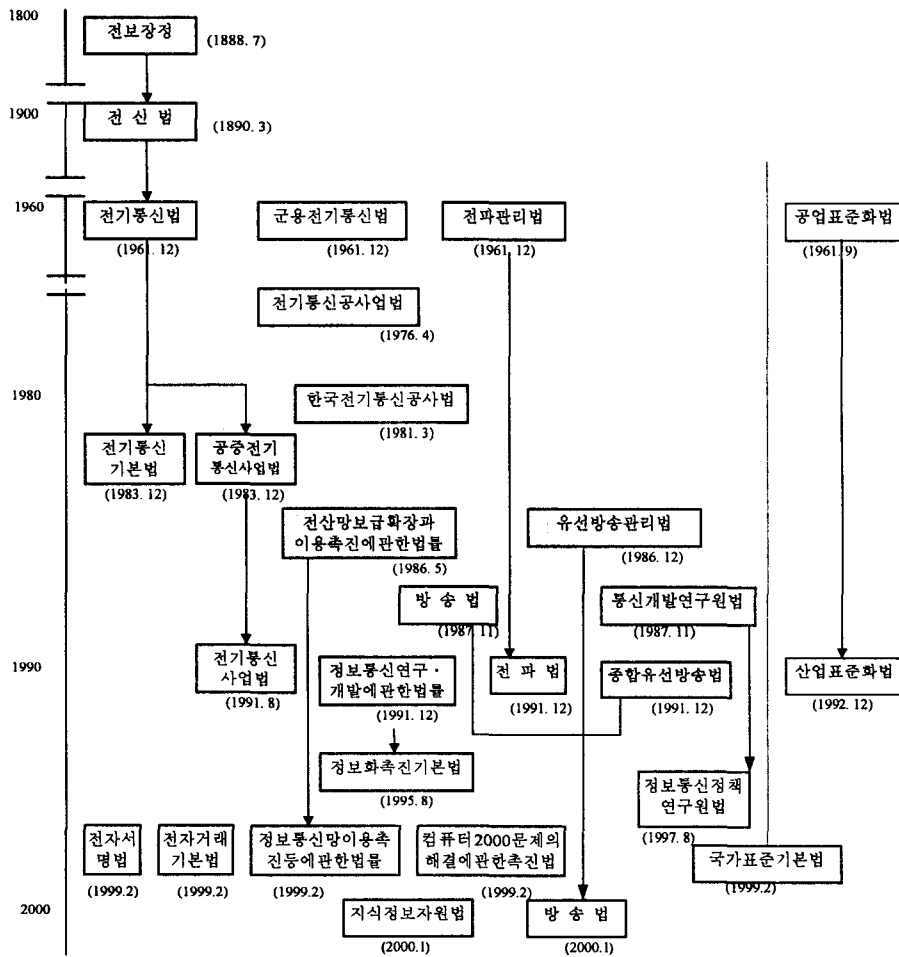
으로 분리되어 전기통신의 운영과 지도,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전기통신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집중하는 국내통신시장에서의 경쟁도입요구와 외국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 차례 부분 개정하여 관리·운영해오던 중, 통신기술의 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증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 참여요구가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였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통신사업을 육성하며 대외 경쟁력을 제고·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정부에서는 통신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정하였다(이후 1995년 8월 4일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4969호) 제정)[2].

1990년대 말 부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상거래가 발전하고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이 시도되면서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21세기 Y2K를 대비한 컴퓨터 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이 그 예이며, 기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새로이 제정된 법률들이다. 한편 기존의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여 방송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그림 1 참고).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



( )안은 개정된 해  
 □은 폐지된 법률

(그림 1) 국내 표준화 관련 법규의 변천

이에 따라 1991년 8월 10일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고, 1991년 12월 14일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법률 제4,438호)을

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측면의 노력들이 가시화 되면서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48개 관계법령에 따라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국가표준체계를 발

전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1999년 2월 8일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전기통신분야는 앞으로도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분야로서 그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무리이며, 이하에서는 전기통신산업발전의 주요 기반 중 하나로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에 관한 법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II. 국내 표준화 법체계

### 1. 특징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정부주도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현 산업표준) 위주로 추진되었다.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1952년 우리 나라가 ITU에 가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89년에 표준제정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가 설치되면서 비로서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표준화 대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의 양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참고).

산업표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를 주관부서로

대해서는 정보통신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분야별로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표준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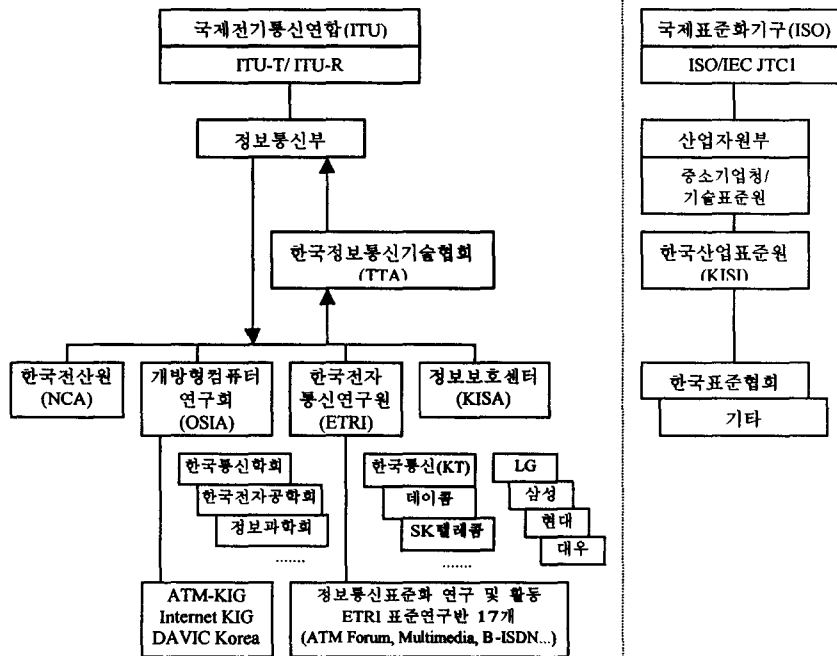
지난 1999년 2월에는 48개 관계법령에 따라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국가표준체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소 산업표준에 치우친 듯한 경향이 강하여 아직도 표준화에 대한 일관된 법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표준화 체계가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으로 나뉘어짐에 따라 이하에서는 정보통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2000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보통신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법 정비의 일환으로 몇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도 표준화 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의 고찰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 2. 국가표준기본법

#### 가) 개요

그 동안 48개 법령에 의해 10여 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가표준체계를 통합하여 WTO 출범이후 확대·강화된 국내산업의 개방화와 자율화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그림 2) 우리나라 표준화 체계

하여 산업표준화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표준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심의회를 둘 것을 골자로 하여 1999년 2월 8일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 제127조제2항의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사회의 축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에 적용된다.

나) 주요내용

①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가표준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표준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②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제20조)

국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표준 제정시에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반영하여야 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표준화 법체계

가) 개요

산업표준화와 달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이 각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 6개 법률에서 표준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표준화의 축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표준화의 추진, 국제표준화 활동, 이들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기금조성, 유관기관의 설치 등 주로 표준화 활동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들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

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의 대상·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1997-29호, 1997.5.24.)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8월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정보통신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제5조)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제19조)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응용서비스에 관한 표준화·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기타 정보통신관련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 촉진(제24조)

국제표준화 사업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정보화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④ 정보통신관련 기관의 지원 및 기금(제25조 및 제34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운용한다.

⑤ 지원기관 한국전산원(제10조) 및 한국정보보호센터(제14조의2, 범시행령 제15조)

한국전산원 및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원활한 정보유통과 공동활용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 전기통신기본법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전기통신 표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전기통신 표준화에 관한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8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② 전기통신 표준화의 추진(제29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전기통신표준의 채택시 이를 고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의 대상·절차·방법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였으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조항은 1999년 2월 26일 폐지되었고, 정보통신표준화지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③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설립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제16조에 의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능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단체표준의 제정 및 국가표준안 건의
- 표준의 보급 및 확산
- 국제표준화 동향조사 및 국제회의의 참가활동
-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 과제에 대한 처리
- 기타 표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월 급변하는 전파환경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파법을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 및 진흥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은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전파진흥기본계획(제59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방송기기 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파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파관련 표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제63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이용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추진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시행규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의 내용으로는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

③ 국제협력의 촉진(제65조)

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여 전파이용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 2월 기존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시책의 일환으로서의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제4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표준화등에 정보사회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제7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관한 제품인증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 아직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TTA에의 권한 위임·위탁(제26조)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역시 정보통신망 관련 표준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④ 기타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제10조)

정부는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년 1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제12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제13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품질인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지식정보자원법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이에 대한 표준화 계획 수립(제9조)

정보통신부장관이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제12조)

지식정보자원자원의 표준화 내용으로는 지식정보자원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기타 지식정보자원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 정보통신표준화지침

표준화에 대한 최초의 규정은 1990년 7월 27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표준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었다. 이후 전기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1994-97호, 1994. 12. 29.)과 전산망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1994-98호, 1994. 12. 29.)이 제정되었으나, 이를 통합 개편하여 현재는 정보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1997-29호, 1997. 5. 24.)에 따라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침은 5개장 19개조항과 부칙 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준화 절차에 관한 부분, 표준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부분, 협회(TTA)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부분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표 1> 정보통신표준화지침의 내용

| 구분                | 내용  |
|-------------------|---|
| 표준화 절차            | - 표준화 과제의 제안(제3조)<br>- 표준화 과제의 채택(제4조)<br>- 표준안의 작성(제5조)<br>- 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제6조)<br>- 신속한 표준화 절차(제7조)<br>- 국가표준 건의(제8조)<br>- 국가표준 채택예고(제9조)<br>- 표준채택(제10조)<br>- 표준번호체계(제11조)<br>- 표준의 개정 및 폐지(제12조) |
| 표준연구 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 - 표준연구개발·연구개발기관(제13조)<br>- 표준연구개발 지원(제14조)  |
| TTA 조직 및 기능       | - TTA 조직(제15조)<br>- TTA 기능(제16조)<br>- 표준의 공급(제17조)<br>- 표준목록의 공개(제18조)  |

III. 정보통신표준화 법체계의 요약 및 문제점

1. 현행 정보통신표준화 법체계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표준화체계는 헌법 제127조제2항의 국가의 국가표준제도 실시 의무규정을 위시하여 크게 산업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의 양대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법이 없이 분야별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개별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 현행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의 문제점

1999년 2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표준화체계를 발전적으로 통합한다는 취지 하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정보통신표준화와 산업표준화의 양대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표준으로 치우친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그 근거법령이 다양하여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3].

가) 근거법령의 다양성 및 통일성 결여

<표 2>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의 개요

| 법률              | 대상                  | 법률내용  | 비고               |
|-----------------|---------------------|---|------------------|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 체계 총괄          | -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제7조)<br>-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제20조)   |                  |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통신의 표준화 (정보보호시스템) |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br>-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제19조)<br>-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 촉진(제24조)<br>- 정보통신관련 기관의 지원 및 기금(제25조 및 제34조)<br>- 지원기관 : 한국전산원(제10조), 한국정보보호센터(제14조의2, 법시행령 제15조) |                  |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의 표준화           | -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8조)<br>- 전기통신 표준화의 추진(제29조)<br>- 지원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제30조)   | 정보통신 표준화지침 제정    |
| 전파법             |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 -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제59조)<br>-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제63조)<br>- 국제협력의 촉진(제65조)   | 부령 없음<br>적합인증 인정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시책강구(제4조)<br>-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제7조)<br>- TTA에의 권한 위임·위탁(제26조)<br>-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제10조)  | 부령 없음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 -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추진(제12조)<br>- 품질인증(제13조)   | 대통령령 없음          |
| 지식정보자원법         |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 -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표준화계획 수립(제9조)<br>-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제12조)   |                  |

먼저 정보통신 표준화는 그 근거법령에 있어서 일반법이 없고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광공업품의 표준화 즉 산업표준화는 산업표준화법이 일반법으로 규율하면서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타 표준화를 선도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정보통신의 표준화는 그 대상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관 법령에 중복적·다층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시인 정보통신표준화지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 표준화 대상의 다양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표준화의 다양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법체계의 부적정 및 위임규정의 부적정

정보통신표준화는 산업표준화와 비교하건대, 그 법 단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위임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즉 산업표준화는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보통신표준화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각 개별법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선언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표준화를 규율

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표준화지침인 것이다.

한편, 각 개별법에 부령에의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령이 없는 상태이다.

다) 인증제도의 미비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1997년 국가인증제를 민간자율에 의한 인증제도로 변경하면서 전기통신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는 규정이 그대로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표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해서 적합인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황중연, 80년대 전기통신, 통신개발연구원 정책연구 90-07, 1990.12.
- [2] 이선화 외,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법규분석, TTA 저널 제20호, pp.49-62.
- [3] 강인재 외, 기술통합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관련 법규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11.